

제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6
------------------	-----

제출년월일 : 2001. 7. .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130m'이상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완화
-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고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을 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자가 납부하여 할 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3조
 - 가산금 부과 규정 일부 폐지
- 제15조
 -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
- 제17조의 3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을때에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토지가액에 면제된 주차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건축비 포함)에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다.
- 건축비는 당해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 포함)로하고 건축후 1년이상이면 생산물가치수로 보정
- 부설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비용의 1/2을 감액할 수 있다.
- 부설주차장의 총비용은 건축부지 토지가액에 건축부지에 면제되는 주차면수 를 곱하여 산정한다.
- 시설부지 1구획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 토지가액에 주차1면의 면적을 곱 한다.
-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다.
-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 1주차구획은 12제곱미터 9대 이상인 경우 1 주차구획은 18제곱미터로 한다.

3. 근 거 법령 : 불임

4. 의 안 전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첨 부 : 1. 기타참고자료(법령등)사본 1부

2. 입법예고 사본 1부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을 “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으로하고 동조 제1호의 “단독주택” 을 “다가구주택”으로 동조제2호의 “단독주택” 을 “다가구주택”으로한다.

제17조의3 본문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1항 및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출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제 목 :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p> <p>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p>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p>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駐車場法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章 附設駐車場

第19條 (附設駐車場의 設置) ①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準都市地
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準農林地域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
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5·
12·29>

②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提供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
로 정한다.

④第1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인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附近에 車場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附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第2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位置, 用途, 設置方法 등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物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납부함으로써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활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납부된 費用은 그에 활용되는 附設駐車場의 設置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5·12·29>

⑥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費用을 납부
한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안
에서 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城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
車場에 한한다)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 "路外駐車場無
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敷地로부터 第4項 後
段의 規定에 의한 범위안에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路外駐車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⑦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6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無償使用
權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設置費用을 減額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⑧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은 施設物의 所有者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所有者가
이를 承繼한다. <新設 2000·1·28>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駐車場法

⑨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費用의 算定基準 및 減額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2000·1·28>

⑩特別市長·廣城市長 또는 市長은 附設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95·12·29>

(全文改正 90·4·7)

第19條의2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 附設駐車場을 設置하는 者는 施設物의 建築 또는 設置에 관한 許可·認可등을 申請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用途變更으로 인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申告하는 때(用途變更申告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用途變更하기전을 말한다)에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8)

第19條의3 (附設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 등) ①附設駐車場을 관리하는 者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②第1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에 대하여 이를準用한다.

(全文改正 99·2·8)

第19條의4 (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 등) ①附設駐車場은 駐車場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가 附設駐車場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게 原狀回復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



충청북도

우 360-765 충북 청주 상당구 문화 89 / 전화 220-3323, 행 3323 / 전송 220-3329
교통도로과 과장 송영화 / 교통지도담당 박철규 / 담당자 김종석

문서번호 교통58400 - 1624

시행일자 2000. 6. 30 (3년)

공개여부 공개

받음 더(01 ~12)

참조 교통담당과장

선 람	시 313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0. 7. 1~?	결 재
번호	번호	8881	· 공 람
처리과		상당 이재중	
담당자		담당자	김종석
심사자		심사일	

제목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 통보

1. 주차장법 개정(2000. 1. 28. 공포 7. 29. 시행)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두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을 이첨 통보하니 각 시·군에서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시행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면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 1부.

2. 조례 작성지침 설명자료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전결 건설교통국장 김 종 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 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 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 m²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 풍 명 월 의 본 향 제 천

제 천 시

우(390-701) 제천시 천남동 12-2 / 전화(0443)640-6392 (행)6392 전송640-6379
도시건축과 / 과장 신승우 / 건축담당 장현우 / 담당자 유영진

문서번호 도건 58550 - 8-1

시행일자 2001. 3. 15(년)

공개여부 부분공개

받음 교통과장

참조

선 람		71373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1. 3. 16 13:09	결 재 · 공 람	
	번호		담당자	유영진
	처 리 과	교통과		
	담 당 자		담당자	김숙희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제천시주차장조례 개정 건의

* 조례개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주차장 조례중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개정의견을 불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향후 조례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도 시 건 축 과 장

자연이 숨쉬는 청정제천 건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영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시설물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2000. 6. 5></p> <p>1.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 시설물은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을 적용한다.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2000. 6. 5></p> <p>2. 단독주택은 3가구당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 당 1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은 세대당 1대로 산정한 대수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중 많은 대수를 설치 한다(단, 가구당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소�数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개정2000. 6. 5></p>	<p>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영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시설물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2000. 6. 5></p> <p>1.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의 시설물은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을 적용한다. (단,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p> <p>2. 다가구주택은 3가구당 1대, 다세대주택은 3세대당 1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은 세대당 1대로 산정한 대수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중 많은 대수를 설치 한다(단, 가구당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소�数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개정2000. 6. 5></p> <p>※개정이유 : 준농림지역등에서 130m' 이상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사항 임(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p>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규제사항 심의안건

의안번호	42	관련부서	교통과
조례·규칙	제천시주차장조례 제3조제3항제1호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9조제3항		
규제사무	주차요금 및 가산금		
규제내용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 발견시 이미 1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실무소의견	<p>【완화】</p> <p>부과한다는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완화</p>		
연구진의견			
평택시의견			
규제개혁위원회의견	<p>【폐지】</p>		
의결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폐지	<input type="checkbox"/> 완화	<input type="checkbox"/> 존치

제 344 호

제 천 시 보

2001. 6. 8(금)

제천시 공고 제2001-329호

제천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7일

제 천 시 장

제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행정규제경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경비
-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130㎡이상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완화.
-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을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차장 설치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가산금 부과 규정 일부 폐지
-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토록 완화

제 344 호

제 천 시 보

2001. 6. 8(금)

○ 제17조의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1면당 설치비용은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포함)에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2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다.
- 건축비는 1년이하인 경우 실제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 포함한다)로하고 건축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 부설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비용의 1/2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부설주차장의 총비용은 건축부지 토지가액에 건축부지에 면제되는 주차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시설부지 1구획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 토지가액에 주차1면의 면적을 곱한다
-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한다.
- 총주차대수가 8대이하인 경우 1주차구획은 12제곱미터 8대이상인 경우 1주차구획은 18제곱미터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6. 30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천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40-6296, FAX 640-629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